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국가보훈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보훈급여금등을 환수하는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20호, 2023. 1. 17. 공포, 2023. 7. 18. 시행)됨에 따라, 보훈급여금등을 환수할 때 부과하는 이자와 연체금 산정기준 등을 마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 발굴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제공 요청 범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포함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이자 및 연체금의 산정기준 마련(제37조제2항 및 제4항)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급여금등을 받은 경우에 가산하는 이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국세환급가산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함
- 2) 환수금을 납입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징수하는 연체금은

채납된 보훈급여금등에 연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
하되, 연체금 부과기간은 최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나. 환수금 분할납부 제도 마련(제37조제5항 및 제6항)

납부의무자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최대 60회 이내에서 환수금을 매월 분할하여 납부하
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의 범위 구체화
(별표3의2)

생활조정수당 지급 및 상속인에 대한 보훈급여금등 환수처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정보 및 「상
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보훈급여금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보훈급여금등과 그 이자(이하 “환수금”이라 한다)를 환수 처분
(이하 이 조에서 “환수처분”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보훈급여금등을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하며, 법 제36조에 따라 보훈급여금등의 반환
의무가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한
다)에게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부의무자는 환
수금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환수금을 내야 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자는 환수 대상 보
훈급여금등(이하 이 조에서 “환수보훈급여금등”이라 한다)에 제1호의
이자율과 제2호의 기간을 곱하여 산정한다.

1. 이자율: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
율

2. 기간: 환수보훈급여금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환수처분의 통
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 다만, 환수처분의
통지 전에 환수보훈급여금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환수보훈급여금

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이를 모두 반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다.

④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연체금(이하 이 조에서 “연체금”이라 한다)은 환수금 납부기한(이 조 제5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납부기한을 말하며, 제6항에 따라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 전에 분할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분할납부금은 분할납부 취소일을 말한다) 다음 날부터 그 환수금을 모두 낸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환수보훈급여금등에 연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체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납부의무자는 환수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은 환수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횟수의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는 분할납부 기간 동안 내야 할 환수보훈급여금등에 제2항제1호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회당 분할납부금은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환수금과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를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하되, 보훈급여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의 착오나 누락으로 처음부터 보훈급여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를 면제한다.

1.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2.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40회

3. 반납해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60회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분할납부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남은 환수금, 그 때까지 발생한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와 연체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기한은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한 날로 한다.

별표 3의2에 제7호의2, 제19호의2, 제21호의2 및 제2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관한 정보

19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에 관한 정보

21의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정보와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및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에 관한 정보

21의3.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에 관한 정보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 개정규정 중 이자 가
산과 연체금의 징수에 대한 부분은 2023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7조(보훈급여금등의 환수) ①</u> <u>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5조제</u> <u>1항에 따라 보훈급여금등과 그</u> <u>이자(이하 “환수금”이라 한다)</u> <u>를 환수 처분(이하 이 조에서</u> <u>“환수처분”이라 한다)하는 경우</u> <u>에는 보훈급여금등을 받은 사람</u> <u>(상속인을 포함하며, 법 제36조</u> <u>에 따라 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u> <u>무가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u> <u>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u> <u>한다)에게 환수금 반납고지서를</u> <u>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부의무</u> <u>자는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받은</u> <u>날부터 30일 이내로 환수금을</u> <u>내야 한다.</u> <u>②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u> <u>부분 본문에 따른 이자는 환수</u> <u>대상 보훈급여금등(이하 이 조</u> <u>에서 “환수보훈급여금등”이라</u> <u>한다)에 제1호의 이자율과 제2</u> <u>호의 기간을 곱하여 산정한다.</u> <u>1. 이자율: 「국세기본법 시행</u> <u>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u>

따른 이자율

2. 기간: 환수보훈급여금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 다만, 환수처분의 통지 전에 환수보훈급여금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환수보훈급여금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이를 모두 반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다.

④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연체금(이하 이 조에서 “연체금”이라 한다)은 환수금 납부기한(이 조 제5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납부기한을 말하며, 제6항에 따라 분할납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 전에 분할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분할납부금은 분할납부 취소

일을 말한다) 다음 날부터 그 환수금을 모두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환수보훈급여금등에 연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체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납부의무자는 환수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은 환수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횟수의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는 분할납부 기간 동안 내야 할 환수보훈급여금등에 제2항제1호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해당 분할납부금은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환수금과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를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하되, 보훈급여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의 착오나 누락으로 처음부터 보훈급여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를 면제한다.

1.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2.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40회

3. 반납해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60회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분할납부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분할납부결정을 취소하고, 남은 환수금, 그 때까지 발생한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와 연체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기한은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한 날로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5420